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8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7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규정을 정비(안 제3조제4항)
- 나.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(안 제4조제5호)
- 다.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기간 규정을 정비(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)
- 라. 공공체육시설에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(안 제1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등 (※ 붙임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6. 12. ~ 7. 3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. 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.

제14조제1항제8호 중 “경우에는 사용료·이용료 전액을 반환”을 “경우의 사용료·이용료 반환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설치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하되, 홍보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)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용허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</u> · 절차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사용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경기연습·개인연습·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. 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.</u>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·이용료 및 입장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~ 7. (생략)

8.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
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
사용료·이용료 전액을 반환

② 삭제

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
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
5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
반환한다.

제17조(사용자의 부대설비) ① 사
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
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
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
다.

②·③ (생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----- 경우의 사
용료·이용료 반환은 「체육시
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21조의2 별표 3의2
기준을 준용

③ -----

3 -----
-----.

제17조(사용자의 부대설비) ① --

----- 설치하되, 홍보물(입간
판·현수막·벽보 등)을 설치
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대회
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
보물은 예외로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- 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어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21조의2(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)**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, 사용허가의 우선순위, 시설운영자 귀책에 따른 이용료·사용료 반환 시 손해배상 기준 마련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권 두 성